■ 백왕식규가스	:의 안1	<u> </u>	식[걸시 제4/오시식]	</th <th></th> <th>( 앞쪽)</th>		( 앞쪽)			
제 호									
		정	기검사증명	<b>불서</b>					
정기검사 대상 특정사용시설		상호(건축물 명)		대표자 성명	<b>!</b>				
		소 재 지		,	'				
정기검사자		검사원 성명		검사 연월일	<u>!</u>				
		차기 검사일		'					
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」 제4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									
제11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의 정기검사증명서를 발급합니다.									
사 용 자	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」 제35조제1항 • 제2항 및 제44조제1항에 따라 저장설비, 연소기, 가스설비, 배관 등을 설치하는 경우 시공자에 의한 적법시공이 요구되며, 사용자께서는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을 유지하여야 합니다.								
시 공 자	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」 제35조제2항에 따라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맞게 시공하여야 합니다.								
공 급 자	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」 제30조에 따라 공급자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.								
검 사 자	이 검사증명서는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에 대하여 검사자가 검사 당시의 기준에 근거하여 기준과 일치하지 않거나 기준에 위반되는 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음을 확인하는 것입니다.								
검사기관 담당부 <i>사</i>			전화번호: <b>스안전공사 사</b> 경	년 <b>장</b> 직인	어머	일			
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 직인									

번 호	검사	검사	21.1. 24.21	검사원 성명		ш¬
	신청일	연월일	검사 결과	(사 번)	확 인	비고